

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정예정 안건목록

【2017. 7. 11 (화) 15:00,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】

■ 총 6건 (심의 5, 자문 1)

순서	안 건 명	개 요	심의결과	비 고
1	상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노원구 상계로35나길 18(100,842㎡) ○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7년 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·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진로결정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촉진계획 변경 -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(도로, 공원, 녹지, 학교 등) 변경 - 건축계획 변경(세대수, 평형조정 등) 등 	보류	<p>〈재 상 정〉</p> <p>주거사업총괄팀 조 중 환 (2133-7220)</p>
2	은평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자문 - 주거·상업지역간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법정자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은평구 진관동 일대(3,492,638.3㎡) ○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업⑨의 용도지역 변경(일반상업 → 준주거) - 공익①일부의 용도지역 변경(제2종일반주거 → 일반상업) - 편익④⑤의 용도지역 변경(제2종일반주거 → 일반상업) ※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주거·상업지역간 용도지역 변경은 주민공람 이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정함 	보류	<p>〈신 규〉</p> <p>주거사업총괄팀 장 길 흥 (2133-7217)</p>
3	자양1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광진구 자양동 680-63번지 일대(78,147㎡) ○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도로·공원 변경, 공공청사(광진구청사) 입체적 결정, 문화시설 폐지 등 - 건축계획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건축물 용도계획, 세대수, 건축배치, 주동형태 변경 등 	보류	<p>〈신 규〉</p> <p>주거사업계획팀 장 영 석 (2133-7222)</p>
4	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(안)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금천구 시흥동 212번지 일대(721,416㎡) ○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흥1·2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지정목적 미달성으로 지구해제 ※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 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	원안가결	<p>〈신 규〉</p> <p>주거사업계획팀 윤 유 환 (2133-7223)</p>

순서	안 건 명	개 요	심의결과	비 고
5	<p>방화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(안)</p> <p>-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지정(안)</p>	<p>○ 위 치 :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(361,776㎡)</p> <p>○ 내 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화5존치정비구역 → 방화5촉진구역(재건축) 지정 · 용도지역 : 2종(7층)일반주거 → 2종일반주거 · 토시아용계획 및 기반시설(도로, 공원, 광장 등) 결정 · 세대수 : 1,552세대(임대주택 52세대 포함) · 정비계획/예정법적상한 용적률 : 198.1% / 216% 	수정가결	<p>〈신 규〉</p> <p>주거사업계획팀 홍 인 철 (2133-7224)</p>
6	<p>미아지구 존치관리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심의</p>	<p>○ 위 치 : 강북구 미아동 460번지 일대(11,048㎡)</p> <p>○ 내 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건축한계선 : 5m→1m / 3m→1m ▶ 관장용도 및 최소필지규모 폐지 -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지침 변경 	원안가결	<p>〈신 규〉</p> <p>주거사업관리팀 정 경 일 (2133-7227)</p>